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5

발의년월일 : 2018. 10.

발 의 자 : 김진천,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1. 제안이유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위탁 및 운영·수리 비용지원 및 지원기준과 절차 (안 제4조 ~ 제6조)

라. 수리센터 이용 시 편의제공 (안 제7조)

마. 위탁의 취소와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가.「장애인복지법」

5. 예산조치 : 필요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탁 및 운영·수리비용 지원)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제7조(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3.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센터 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수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 소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출장형태	☐ 내방수리 ☐ 출장수리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 리 필요사항	☐ 타이어 및 튜브 ☐ 모터 및 브러쉬 ☐ 충전기 ☐ 브레이크 및 기어 ☐ 컨트롤러 및 배선 ☐ 차체수리 ☐ 기타( )
수리와 관련한 주의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수수료
	없음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